

부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3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배 치 열)

□ 제안이유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함.
(안 제31조, 별표 1의2 신설)
 - 옥외광고제작업 :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
 - 옥외광고대행업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불법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인데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	○ 현행 신고제에서는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음. 향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현재의 절차는 ?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고 시에는 신고하게 되어있음.
○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방법으로 주2회 주기적 단속과 주말마다 시, 구청이 합동으로 사회적 문제시되고 있는 전단지, 현수막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호
의결 년월일	2006. 9. 15 (제130회)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31조, 별표 1의2 신설)
 - 옥외광고제작업 :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
 - 옥외광고대행업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나.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
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1호 가목 (1)(라)·(2)(라) 및 동호 나목 (1)(라)·(2)(라)·(3)(라)의 과태료란중 “금액”을 각각 “금액 이하”로 하고, 동표의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가. 30일 미만	15만원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40만원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70만원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30만원
마. 1년 이상	240만원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 로 과
입 안 자	담당과장	배 치 열
	담당팀장	임 명 호
	담 당 자	강 태 형(☎320-2812)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별지 제1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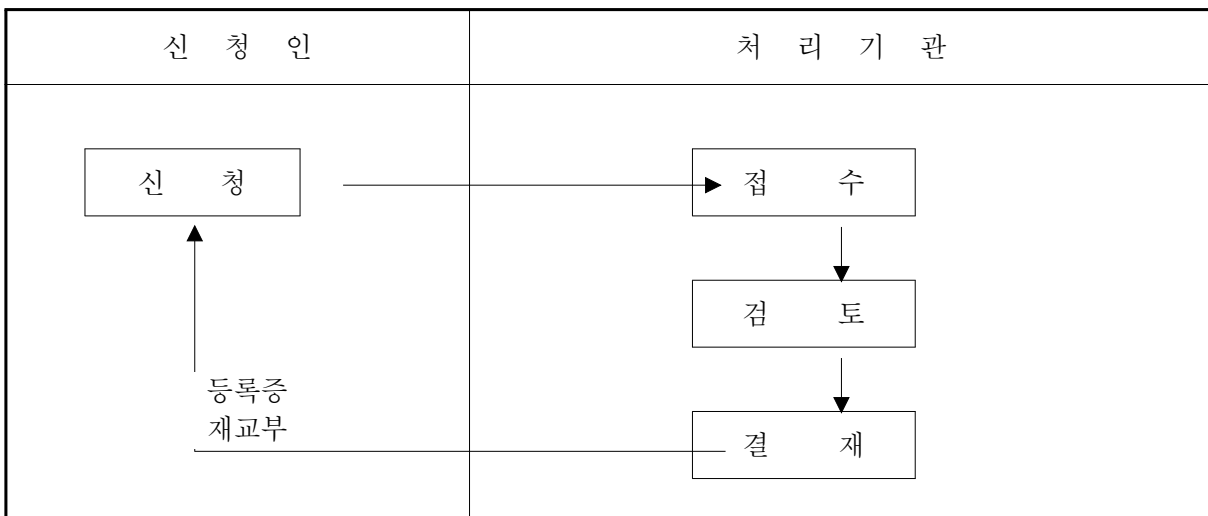
(앞 쪽)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장소재지	
재교부신청사유		분 실	훼손	기 타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p> <p>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